

보도 시점 2026. 4. 27.(월) 12:00 배포 2026. 4. 27.(월) 10:00
(브리핑 10:30)

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, 끝까지 쫓아가 받아냈다. 국세청, 작년 하반기 이후 체납자 해외재산에서 세금 339억원 환수

-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
- 현재 해외에서 환수절차 진행 중인 건만도 수백억 원의 추가 징수 예상

1 추진배경

-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칙행위이다.
- 이에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새정부 들어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과 환수를 핵심 과제로 삼아 가용한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히 대응해 오고 있다.

2 해외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금 환수 성과

-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('25.7월) 후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,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하였고, 이 중 3건은 고액·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.
- 이 같은 최근의 징수실적은 '15년 이후 이루어진 총 징수공조 실적(18개국, 총 24건, 372억원)의 대부분을 차지한다.
- 아울러,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는 최근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.

3 해외재산 추적·환수 방법 및 절차

- 해외재산을 추적·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, 즉 ①과세정보 교환과 ②채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다.
 - 추적·환수 과정에서의 국세청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끈기·열정과 외국 과세당국을 설득·재촉하기 위한 실무급·고위급 접촉도 수반된다.
 -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연계·활용하여 해외재산 항목과 소재지를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해외 과세당국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친다.
- **정보교환** 해외재산 파악을 위한 공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한 과세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.
 - 예컨대,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면서 확보한 대량자료를 통해 해당 채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한다.
 -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하여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, 해외부동산 보유 정보의 경우 다수 채납자를 한데 묶어 (grouping)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하여 수집하고 있다.
 - 앞으로 정보교환 국가 수와 교환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, 이로써 은닉재산 파악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.
 -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하여 2027년부터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게 되고,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.
- **징수공조** 소재가 파악된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절차를 밟는다.
 - 채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이 해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.

이 때문에 외국 과세당국이 우리 국세청 대신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압류·추심 등 강제집행하고 징수해 주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, 이러한 국가 간 협력행위가 징수공조이다.

- 특히, 징수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,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(MOU)을 체결하였으며,
 - 현재 다수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MOU 체결이 늘어날수록 징수공조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

4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통한 해외재산 환수 사례

□ 징수공조 유형은 체납자 신분, 체납금액 및 환수방법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.

- 체납자는 내국인과 외국인,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지를 가리지 않는다.
구체적으로는 ①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, ②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을 떼먹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, ③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소득원이 없어지면 출국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가 등이 있다.
- 체납세액 규모는 소액부터 수백억 원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고액·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된 적이 있다.
- 환수방식은 ①외국 과세당국이 강제징수한 경우 외에 ②체납자가 징수공조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.

□ 징수공조를 통해 최근 환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* 외국 과세당국의 요청, 양국 간 합의와 국제적 관례 및 국제기본법에 따라 상대국가 이름이나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상세한 공개는 어려움

[완료 사례] 외국인 체납자 3건

- ①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, 징수공조에 부담 느껴 본국 소재 재산 팔아 자진 납부
- (국세청)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①실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부동산·주식 등 해외재산 확인한 후 ②징수공조 요청 및 ③고위급·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④재산은닉 혐의 있는 다른 국가에도 정보교환 요청
 - (체납자)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국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 체납하다가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 수령 직후부터 분할하여 체납세금 대부분 납부
- ② 해외로 도망간 외국인 프로선수, 본국 과세당국에 물어 재산 찾아냈다
- (체납자) 고액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중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후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하여 해외에서 활동
 - (국세청) 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하여 금융계좌 등 재산내역 확보하고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납부
- ③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, 결국은 제3국에서 덜미 잡혔다
- (체납자)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A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B국으로 출국하고 세금은 장기간 체납
 - (국세청) 각종 정보분석으로 C국 소재 금융계좌와 자동차 포착하여 C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 요청하자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세금 납부

[완료 사례] 내국인 체납자 2건

- ④ 남의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체납자, 해외 관계사가 제3국에 숨겨놓은 예금 환수
- (체납자) 해외 사업체가 여럿 있음에도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 납부 거부
 - (국세청) 체납자가 실질 지배하던 해외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보분석을 통해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내 ①불복 등 체납자의 저항을 이겨내고 ②해외 과세당국에 징수 위탁 및 ③수차례의 실무회의 개최로 상대국 설득 등 노력 끝에 예금 전액 추심
- ⑤ 외국 영주권자인 체납자의 국내 재산이 모자라 해외계좌 파악 후 징수공조로 환수
- (체납자) 출국금지와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에도 납부 거부
 - (국세청) 국내 재산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과다 등으로 실제 징수 못해 영주권 보유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정보 확보 후 외국 과세당국을 통해 체납자의 현지 계좌에서 체납세금 추심

[진행 중인 사례] 2건

⑥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 벌이면서 세금 납부는 안해..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고 현지 변호사도 고용해 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 중

- (채납자) 수백억 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고액·상습채납자로 명단공개되어 있음에도 해외에서 몰래 사업 영위하다가 현지법인이 파산 절차에 돌입
- (국세청)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 검토 끝에 사상 최초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키로 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하여 파산재판 참석, 확정채권자 지위 성공적 확보 등 잔여재산 배분절차 진행 중

⑦ 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 이용해 세금 체납하고 외국 대도시 호화주택 거주.. 그간 세금 한 톨 안내다가 징수공조 통해 압류하자 즉시 납부의사 밝혀

- (채납자) 국내에서 재산 증여받고도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
- (국세청)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채납자의 해외재산을 추적조사한 끝에 증여자금을 원천으로 해외주택 구입 사실 확인하고 해외 과세당국에 징수공조와 함께 실무자와 소통을 통해 신속한 협조 요청하여 해당 주택 압류에 성공
⇒ 채납자가 전화로 자진 납부의사를 밝혔으며, 미납 시 공매하여 환수 예정

□ 국세청은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채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는 한편,

- 나아가 조세정의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송윤정 (044-204-2901)
		담당자	사무관 국우진 (044-204-2902) 사무관 강승진 (044-204-2942)
<협조>	징세법무국 징세과	책임자	과 장 안민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 서용하 (044-204-3027)

주요 징수공조 사례

사례 1 **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자산가,**
(징수완료) **징수공조에 부담 느껴 본국 소재 재산 팔아 자진 납부**

□ 주요 징수공조 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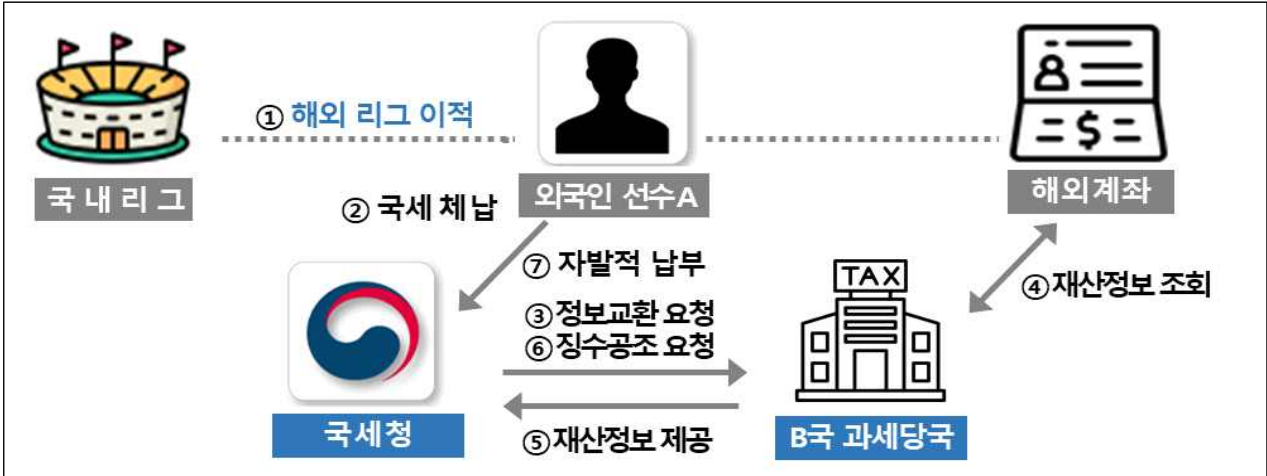
- (채납자) 외국 국적의 A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해외 B국에 거주하고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함
- (국세청) 체납자 A가 체납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의사 없이 버티는 중이라 판단하고, 세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다각도의 징수활동을 펼침
 - (①정보교환) B국 과세당국에 A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정보교환 요청하여, 부동산·주식·계좌 등 수백억 원의 해외재산 내역을 확인함
 - (②징수공조) B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, 체납자 A에게도 통지
 - (③고위급·실무급 회의) 국세청과 B국 과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,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자 A의 해외재산 강제징수에 적극 협조를 요청함
 - (④제3국 공조) 체납자 A가 다른 C국에도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포착하고, C국 과세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자 A의 재산 내역을 정보교환 요청

□ 징수공조 결과

- (환수) 체납자 A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직후 부담을 느껴 일부 재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분할납부 중이며, 현재 대부분 납부

사례 2 [징수완료]	해외로 도망간 외국인 프로선수, 본국 과세당국에 몰려 재산 찾아냈다
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 주요 징수공조 내용



- (체납자)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프로선수 A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여 해외 리그로 이적, 이후 부과받은 세금을 장기간 체납
- (국세청) A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재산 현황 파악 및 징수공조를 개시한바,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 납부

사례 3 [징수완료]	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, 결국은 제3국에서 덜미 잡혔다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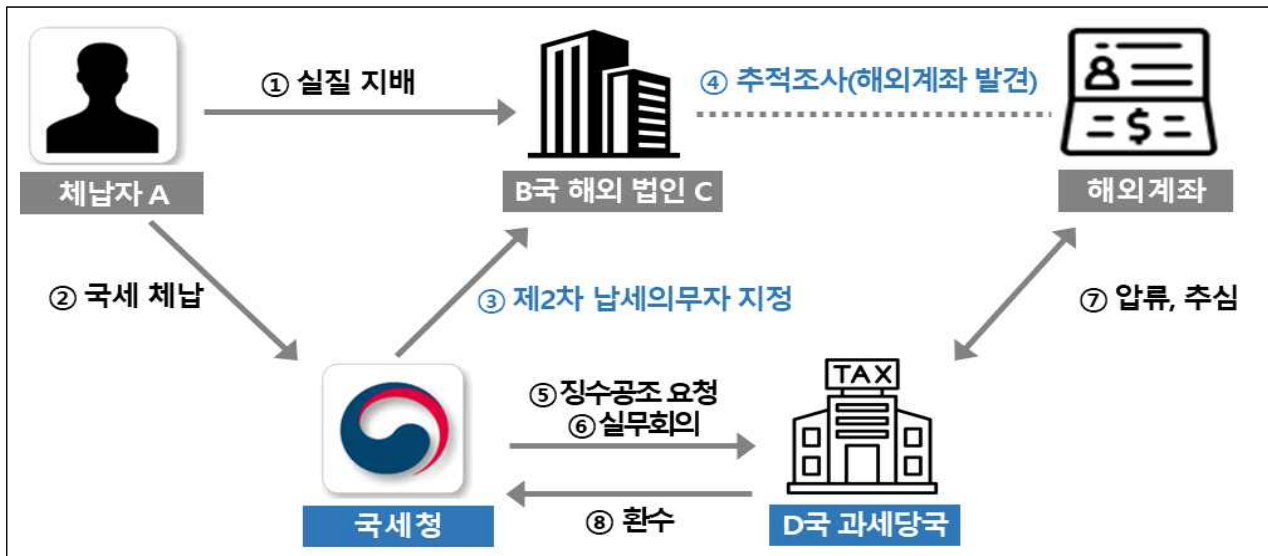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징수공조 내용



- (체납자)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외국 국적자 A는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B국으로 출국하여 세금을 장기간 체납
- (국세청)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A가 소유한 C국 소재 재산을 파악하고, C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 요청하자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

사례 4 [징수완료]	남의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체납자, 끈질긴 노력 끝에 해외 관계사가 제3국에 숨겨놓은 예금으로 환수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□ 주요 징수공조 내용



- (체납자) A는 해외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, 지배구조를 차명
으로 은폐하고 한국에는 일체의 세금 납부를 거부한 채로 장기간 체납
-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여도 체납세금에 부족

- (국세청) 개인이 지배¹⁾하는 해외 법인들은 해당 개인의 체납세금을
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²⁾가 있음에 착안, 체납자 A가 지배하는 B국
소재의 해외법인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

1)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한정 2) [국세기본법 제40조]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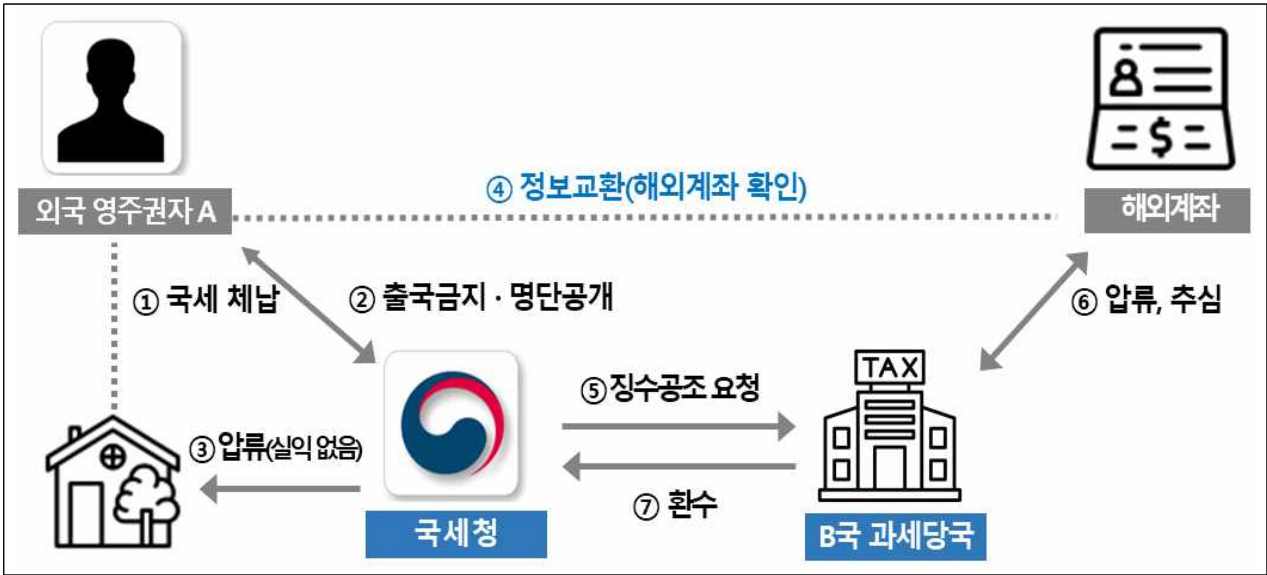
- C는 국내에 강제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, 해외재산에 대하여 추적
조사하면서 정보분석 결과 해외 D국 소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찾아냄
- 국세청은 체납자 A의 조세 불복에도 적극 대응하여 최종 승소하였으며,
D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상대국의 신속한
협조를 설득하여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·추심 조치를 이끌어 냄

□ 징수공조 결과

- 체납자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징수공조
절차를 통해 해외법인 명의로 된 해외예금계좌 보유액 전액 환수

사례 5 [징수완료]	외국 영주권자인 체납자의 국내재산이 모자라 해외계좌 파악 후 징수공조로 환수
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 주요 징수공조 내용



- (체납자) 국내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 A는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
 - 이에 출국금지 및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졌으나, A는 지속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함
- (국세청) A의 국내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착수하였으나,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실제 징수에까지 이르지 못함
 - 영주권을 발급한 B국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A 명의로 된 해외계좌를 확인하고,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계좌를 압류한 즉시 추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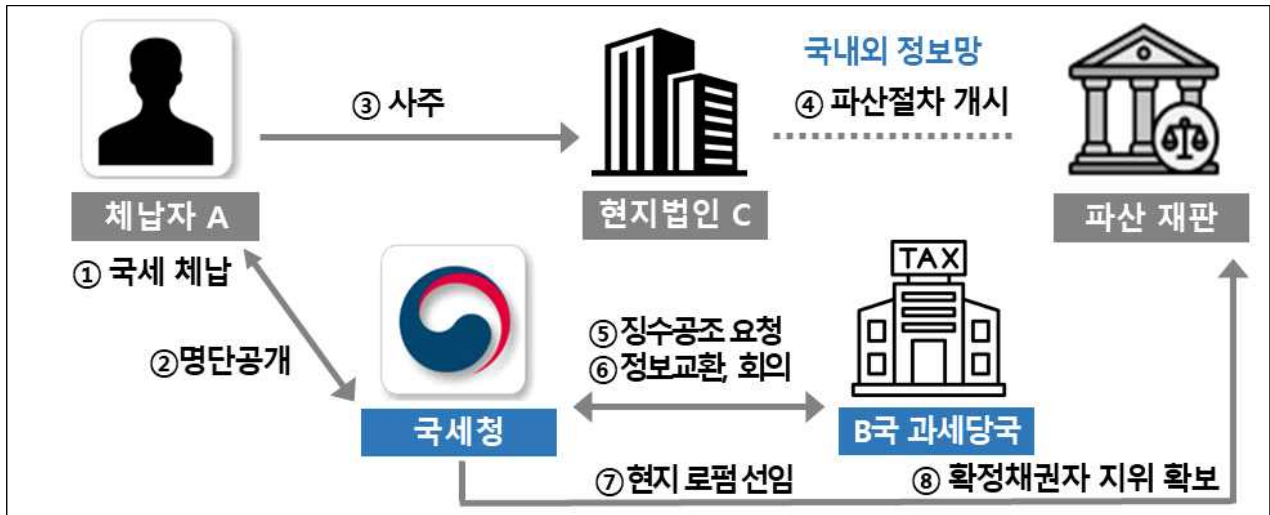
□ 징수공조 결과

- B국 과세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징수공조 요청부터 관할세무서 계좌로 체납세금 환수까지 모든 절차를 수 개월 내에 신속하게 마칩

사례 6
[진행중]

**해외에서 대규모 사업 벌이면서 세금 납부는 안해..
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고 현지 변호사도 고용해
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 중**

□ 주요 징수공조 내용



- (채납자) 국내 사업가 A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고액·상습채납자로 명단 공개되었으며, 국내 재산이 체납세금 충당에 부족
 - A는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B국 현지에서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C의 사주로 확인됨
- (국세청)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현지에서 C 법인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, A의 체납세금 환수를 위한 검토에 착수
 -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을 치밀하게 분석한 끝에 국세청이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,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‘외국 파산사건’에 참여하기로 결정
 - B국 과세당국에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수 차례 회의 개최하였으며, 현지 파산 전문 로펌을 선임하여 재판에 참석하도록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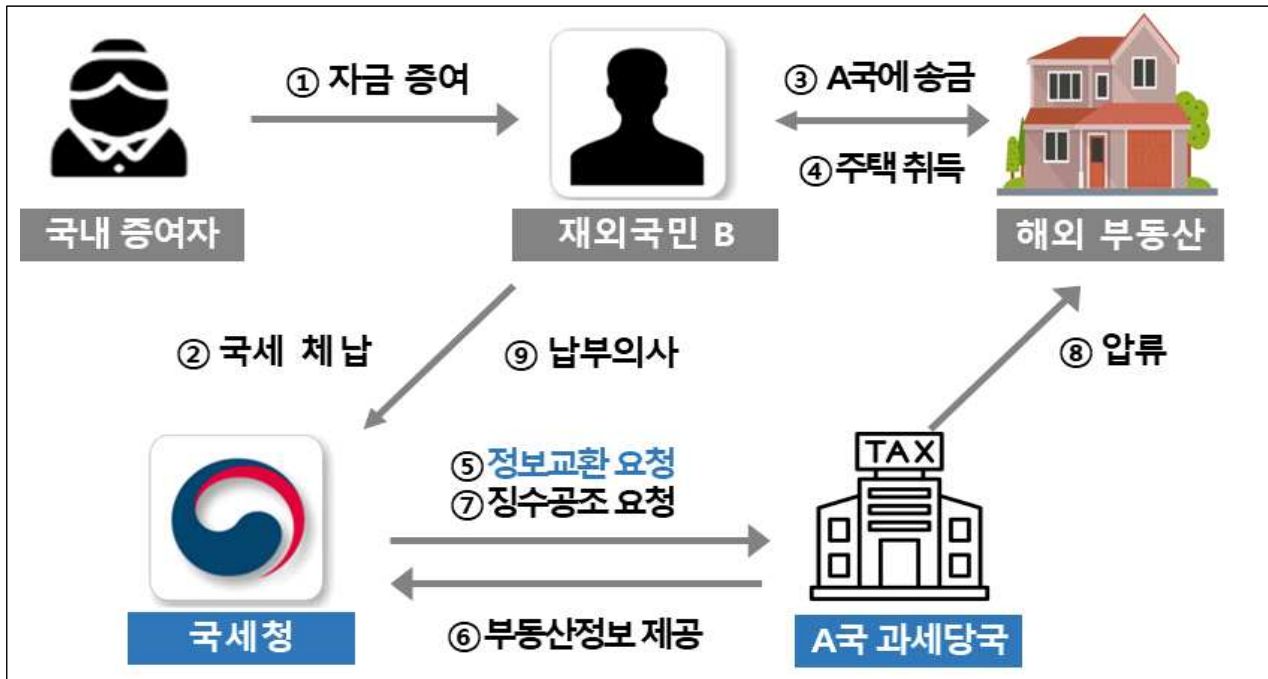
□ 징수공조 결과

- 외국법 검토 및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국세청은 채납자가 소유한 현지법인의 파산재판에 참여하여 확정채권자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
 - 재판에 따라 체납세금을 환수할 것이며, 다른 해외재산이 있는지도 추적 중

사례 7
[진행중]

**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 이용해 세금 체납하고
외국 대도시 호화주택 거주.. 그간 세금 한 톨 안내다가
징수공조 통해 압류하자 즉시 납부의사 밝혀**

□ 주요 징수공조 내용



- (체납자) 해외 A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B는 국내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장기간 체납하고 있으며, 국내에는 강제징수 가능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
- (국세청) B가 고액의 자금을 A국에 송금한 사실에 착안하여 A국의 과세당국에 B의 해외재산 내역을 정보교환 요청하였으며, B가 대도시 호화주택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공 받음
 - A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자 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 결과, 해당 호화주택을 압류 처분하는 데 성공함

□ 징수공조 결과

- 징수공조 시스템의 가동으로 해외 부동산이 압류되자, 그동안 한 톨도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가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와 자진 납부의사를 밝힘
 - 납부 시 압류를 해제할 것이나, 미납 시 공매하여 환수할 예정